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9
----------	------

제출연월일: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 2024. 11. 8. 개정되어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됨
- 이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별첨 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나. 예산조치: [별첨 2] 비용추계서
- 다. 협 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5. 4. 24. ~ 5. 14.)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별첨 3] 결과통보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4] 제외통보확인서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5]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3조(면제 및 반환)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p> <p>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p> <p>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p> <p>② (현행과 같음)</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5년(2025년~2029년)
- 추계방법: 시험 지원자 현황에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의 비율 반영
-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지출	소계(a)	-	-	-	-	-	-
수입	수수료	△780	△780	△780	△780	△780	△3,900
	소계(b)	△780	△780	△780	△780	△780	△3,900
□ 총 비용(a-b)		780	780	780	780	780	3,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비		780	780	780	780	780	3,900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780	780	780	780	780	3,9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김한수 주무관(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감소액: 연 780천원

※ 응시수수료 30천원 * 확대 면제대상자 26명(차상위계층 22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4명)

2. 차상위계층 수 추계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구분	기초수급자	한부모대상자	합계
2023학년도	54명	5명	59명
2024학년도	40명	4명	44명
2025학년도	68명	5명	73명
평균(소수점 절상)	54명	5명	59명

○ 최근 3년간 기초수급 지원자 평균 **54명** * (2023년 전국 차상위계층 1,012,078명/ 2023년 전국 기초수급자 2,554,627명) = **22명**(소수점 절상)

※ 국가통계포털(KOSIS)

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추계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지원자

구분	장애인 지원자
2023학년도	104명
2024학년도	131명
2025학년도	131명
평균(소수점 절상)	122명

○ 최근 3년간 장애인 지원자 평균 **122명** * (2023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78,527명/ 2023년 전국 장애인 등록자 2,646,922명) = **4명**(소수점 절상)

※ 국가통계포털(KOSIS)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수 추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류호찬
입안주관부서	중등교육과	통보일	2025. 4. 29.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 일부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부패를 유발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 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통보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09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	김한수	전화번호	02-399-949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4월 2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4월 30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5년 4월 30일</p>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김한수 (02-399-949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목소희, 박지만, 임종수, 정명화, 여미애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조 제1항	<p>-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p>					원안 동의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5. 3. 1.] [교육부령 제278호, 2022. 9. 5.,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